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범위 및 위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25]
(제정) 2021-05-25 훈령 제 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처리) ①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은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을 받아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정한 목표와 주요 정책·시책의 구체화 및 그에 따른 집행사무,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등은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천광역시경찰청 소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장비를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요 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정책, 시책, 제도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치경찰사무와 지방행정과의 협력을 위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권의 위임) ①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위원의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주요 사안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수립 등에 대한 업무협조)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목표설정, 평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 사건·사고의 처리 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위원회가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제1호, 2021.5.25.>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